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4.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7.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8조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의거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수업 및 진로 상담 등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 2 장 장애학생지원

제3조(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활동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단,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장애학생수가 10명 미만 인 경우에는 교학처(학생팀)에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 한다.<개정 2014.3.1.>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편의제공)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

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지원

제6조(수강신청) 장애학생 유형별 수강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학사관리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디지털정보 이용)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

1. 장애학생 전용열람실
2. 장애학생 전용 사물함
3. 도서 대출기간의 연장적용
4. 기타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편의지원 등

제9조(장애학생 상담) ①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 학내활동 및 진로선택에 관한상담을 위하여 장애학생 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장애학생 도우미제도 운영) ①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1. 학습보조 도우미
2. 이동보조 도우미
3. 도서관이용 도우미

② 도우미학생에게는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기자재 보유)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교육기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2조(전용시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 전용 주차장
2. 장애학생 전용 화장실
3. 장애학생 전용 컴퓨터 검색대

제 3 장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개정 2014.3.1.>
2. 위원은 산학협력처장, 입학홍보1처장, 기획조정실장, 총무처장, 장애학생 소속 학과장이 위원이

되며, 장애학생지원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2015.8.31., 2016.7.28.>

3.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사항
2.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사항
3.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 운영에 관한사항
5. 장애학생의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수립에 관한사항
6.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사항
7.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5조(지원요청)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15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별지 1호)를 센터에 제출하며, 센터는 위원회에 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별지 2호)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 안 된 사항은 장애인 복지법등 관련법령에 준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13조(구성) ②항 2호의 입학처장 명칭은 '입학홍보1처장' , 기획홍보처장 명칭은 '기획처장' 으로 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13조(구성) ②항 2호의 기획처장 명칭은 '기획조정실장' 으로 개정한다.

심 사 청 구 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 명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학 번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 취지				
⑥ 재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경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 ① 사건명 : ○○ 처분 취소 청구
 - ② 피청구인 : 처분권자를 말함
 -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 ④ 심사청구의 취지 :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 ⑤ 심사청구의 이유 :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 ⑥ 기타 입증자료 : 본 건과 관련 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